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6. 26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7. 2

다. 상정일자 : 제10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읍면동 기능전환의 실시와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 시한이 2001. 6. 30일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을 연장함.

. 2001. 6. 30 ⇒ 2002. 12. 31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수행, 대민행정의 지원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 연장승인」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체센터운영 활성화등 기능전환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